

1/ 마이너리티 이론의 탐색

비본질적 · 포괄적 연구를 위하여

신기영



신기영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학(시애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학술진흥회 외국인특별연구원을 거쳐 2008년부터 일본 국립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대학원 인간문화장성과학연구과 준교수와 동(同)대학 젠더연구센터 전임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젠더와 정치, 페미니즘 이론, 비교일본 사회 등이며, 공저에 *The Routledge Handbook of Japanese Politics*(Routledge, 2011), *Global Gender Research*(Routledge, 2010), *Risk and Public Policy in East Asia*(Ashgate, 2010), 『다문화사회 일본과 정체성 정치』(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国家 / ファミリーの再構築』(作品社, 2008) 등이 있다

1. 머리말

일본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마이너리티 및 마이너리티 정체성을 중심에 두는 논의는 아직도 낯설다. 전후 일본의 국가와 주류사회 담론은 일본의 단일민족성을 강조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자부하는 경향이 강했고, 서구의 일본 연구자들은 오리엔탈리즘을 통해 이런 경향을 강화했다. 서구에서 마이너리티 연구를 독자적 학문 분야로 제도화하기 위해 정립한 ‘에스닉 연구(ethnic studies)’나 ‘인종연구(race studies)’는 일본 학계에서 독자적인 연구 분야로 발전하지 못했다. 대신 재일코리안, 재일중국인, 외국적 주민과 같은 마이너리티 집단의 경우 국제사회학이나 이민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정치사회적인 마이너리티로 볼 수 있는 여성이나 고령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집단은 그 특수성을 중심으로 개별 학문 영역의 주변적 위치에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논의에 있어서도 마이너리티적인 성격이 중첩되는 집단—예를 들면, 재일코리안 고령자, 장애인 여성, 오키나와의 일본계 브라질 이민 노동자 등—에 대한 연구는 마이너리티 연구 내부에서조차도 주변적인 지위에 머물러 있다.

한 사회에서의 마이너리티 집단은 결코 자명한 개념이 아니다. 마이너리티는 그 집단이 속한 사회의 역사와 정치적 조건에 따라서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정체성이며, 마이너리티 집단의 경계도 분명하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수 집단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마이너리티에 대한 정의와 경계는 언제나 이들과 다수 지배 집단 간의 첨예한 정치의 장이 된다. 다수 지배 집단이 소수 집단의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수의 문화와 정치이념을 일반적 기준으로 설정할 때, 마이너리티 집단은 소수 집단의 법권리 주장이나 정체성 정치를 통해 이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도전은 다시 마이너리티 집단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형성, 변화—여기에는 스테레오타입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 및 자기정체성 재해석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을 모두 포함한다—

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마이너리티를 독립적이고 불변하는 본질적인 사회집단으로 개념화해서는 안 되며, 다수 지배 집단과의 역사적 관계성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집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계성을 중심으로 마이너리티 집단을 이해한다면 역설적으로 다수 지배 집단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도 마이너리티 연구의 필수적인 과정이 된다.

이러한 점들은 일본의 마이너리티 연구에서 더욱 분명하다. 일본의 마이너리티 집단은 주류 담론과 국가 정책들이 일본의 다문화, 다민족적인 성격을 공식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인권과 소수자 권리 보장에 소극적인 근대국가와 주류사회에 끈질기게 저항해야 했다. 재일코리안 및 중국인, 아이누, 오키나와 주민과 같은 일본의 주요 에스닉 마이너리티의 집단 정체성은 근대국가의 역사적 형성 과정과 후기 식민지성의 포섭과 배제의 논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이들 마이너리티 집단이 오늘날 일본 사회에서 점하는 위치 및 그 변화는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와도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여성, 부락민, 장애인과 같은 사회집단이 가지는 소수자적인 성격도 일본의 근대국가 형성 과정에서 확립된 시민권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마이너리티 정체성은 근대국가의 형성과 주류사회와의 관계에서 형성되고, 이러한 관계성은 마이너리티 집단의 정치적 의미 및 권리 그리고 저항의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두 가지 연구관심에 기반한다. 첫 번째는 비본질적인 마이너리티 집단의 개념화에 대한 관심이며, 두 번째는 첫 번째와 관련하여 필수적인 시각이라고 생각되는 정체성 형성 과정의 관계성과 복합성에 관한 관심이다. 오늘날 한층 복잡화,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의 경험을 이론화하기 위해서는 마이너리티 연구 내부에서도 무시되기 쉬운 집단 내부의 다양한 차이들을 포착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수자적인 성격이 중첩적,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집단의 경험과 정체성 형성 과정을 이론화하는 작업은 그 중요한 적용 사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먼저 마이너리티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범 발전과 일본에서의 특수성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 다음, 마이너리티의 이론화를 위해 정치철학자 영(Young)의 ‘사회집단(social group)’과 구조적 억압의 개념, 일본의 사회학자 우에노(上野)의 ‘복합차별론’, 마지막으로 1980년대 미국 흑인 페미니즘에서 유래한 ‘교차성(intersectionality)’ 개념의 유용성을 각각 검토한다. 이들 개념은 각각 관계성의 측면에서 비본질적인 마이너리티 집단의 정체성과 구조적 억압의 형태를 밝히는 데 장단점을 제공한다. 특히 페미니즘 이론이 발전시켜 온 가장 중요한 논의 중의 하나인 교차성 개념이 오늘날 마이너리티 연구에 제시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2. 국제사회에서 본 마이너리티

마이너리티 연구 및 최근 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다문화주의/정책에 관한 논의들에서 마이너리티 집단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주어진 개념으로 전제되는 경우가 많다.¹ 사실 마이너리티(minority)는 학계에서나 국제 규범에서나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정확한 정의는 없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마이너리티는 주어진 사회의 정치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 변화하는 개념이므로 탈역사적이고 보편적인 정의를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누가 그 사회에서 마이너리티인가라는 구체적인 정의는 그 사회의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문맥 속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마이너리티를 규정하는 최소한의 개념적 틀은 논의의 출발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1 2000년대 중반 이후의 한국에서는 이주민의 급속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다문화정책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입안, 집행되면서 정부예산이 분배되는 거대한 다문화 정책산업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 시행 대상으로서 소수자 집단이 통합, 개념화되는데, 이는 소수자 본인들의 주체적인 마이너리티 정체성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아시아 여성 결혼이주자가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소수자 집단인 것처럼 개념화된 것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브리태니커백과사전은 마이너리티를 “문화적(culturally), 종족적(ethnically), 또는 인종적(racially)으로 구별되는 집단으로 지배 집단과 공존하면서도 종속된 집단”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흑인 차별주의 정책에서 보듯 수적으로 소수라는 것이 마이너리티를 정의하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며, 사회과학에서 마이너리티 집단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종속성(subordinancy)라고 지적하고 있다.² 객관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이 없이 다수 집단과 다른 믿음을 가지는 종교 집단이나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른 노조와 같은 집단은 일반적으로 마이너리티로 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정의에 의하면, 마이너리티를 규정하는 우선적 조건은 지배 집단과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종족적, 인종적, 문화적 차별성과 그 사회에서의 비지배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국제법과 국제 규범을 통해 마이너리티 집단의 권리 개념을 발전시켜 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마이너리티 집단의 정의를 점차 넓혀 왔다. 국제 규범 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마이너리티의 인정, 특히 마이너리티의 집단적 권리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근대국가가 추구해 온 국민국가의 통합 및 동화정책과 갈등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국가들을 주된 주체로 하는 국제사회에서 마이너리티의 구체적인 정의와 권리가 일찍부터 수용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마이너리티의 승인과 권리 범위는 각 국가의 국내적인 환경과 역사적 조건에 따라 주권국가의 주관적인 결정에 의해 결정되고는 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국제 규범이 마이너리티의 권리 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루게 된 것은 1966년 채택되어 1976년에 발효된 국제조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의 제 27조에 의해서라는 것이 일반론이다. 자유권 규약의 제27조는 “종족적, 종교적, 언어적 마이너리티가 존재하는 국가에서 그 집단들이 자기의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언어를 사용하며, 종교

2 www.britannica.com/EBchecked/topic/384500/minority(2012년 10월 25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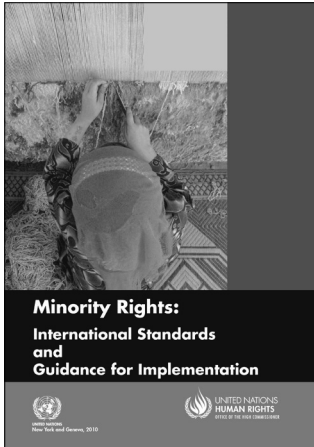
를 신앙하고 실천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³

서구 국제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종교적, 언어적 마이너리티에 대한 권리 보호가 중요한 관심이었다. 캐나다 퀘벡 주의 프랑스어 사용 인구가 일찍부터 스스로를 캐나다의 마이너리티로서 프랑스어 사용 권리를 주장했던 것이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근간이 되었다는 점은 그 예이다. 마이너리티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후 국제사회의 빈번한 종족 분쟁을 겪은 이후 다시 고조되어 1992년에 ‘민족 또는 종족, 종교 그리고 언어적 마이너리티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선언’(유엔 마이너리티 선언)에서 재확인된다. 이 선언은 자유권 제27조를 계승하되 마이너리티의 개념에 ‘민족 또는’을 추가하고 마이너리티 권리의 실현과 지속적인 신장은 “법의 지배에 기반한 민주적인 틀 내에서 완전한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며, 인민과 국가 간의 협력과 우정의 강화를 위해 공헌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⁴ 유엔의 인권 관련 체제에서 마이너리티란 일반적으로 이 유엔 마이너리티선언이 지칭하고 있는 ‘민족 또는 종족, 종교 그리고 언어적 마이너리티’를 의미한다.

그러나 자유권 규약 제27조 조문이나 유엔 마이너리티선언 자체에는 마이너리티 그 자체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마이너리티의 정의에 가까운 것으로서 1977년에 마이너리티 보호와 차별 금지를 위한 유엔소위원회(United Nations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의 위탁연구에 의해 카포토르티(Capotorti)가 작성한 특별보고서를 들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마이너리티에 대해 “한 국가의 인구적 측면에서 소수이며, 피지배자적인 지위에 있고, 그 국가의 국민이면서 다른 주민과 구별되는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록 암묵적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문화, 전통,

3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27.

4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Belonging to National or Ethnic, Religious and Linguistic Minorities.



〈그림 1〉 2010년 유엔 마이너리티 정책 제안에 관한 출판물

종교 또는 언어를 보유하려는 연대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⁵ 이 정의는 그 국가의 국민이라는 규정에 문제가 제기되기는 했으나 마이너리티를 정의할 때 국가나 다수 지배 집단에 의한 판단이 아닌 마이너리티 집단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⁶ 즉, 카포토르티의 마이너리티 정의는 앞서 언급한 객관적 조건에 더해 마이너리티 집단 구성원들의

소속감 및 집단의 특성을 유지하려는 의지와 같은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은 1994년에 규약인권위원회에 의해서 재차 확인되어, 위원회는 마이너리티의 존재가 체약국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객관적 기준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반의견을 채택했다. 더불어 위원회는 자유권 제27조의 권리가 선주민, 이주노동자, 정주외국인뿐 아니라 일시적 외국인 방문자에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광범위한 해석을 담은 일반의견도 채택했다.⁷ 자유권 규약과 유엔 마이너리티선언 이외에 주요 인권 관련 조약에서도 마이너리티 권리와 신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특히 1990년대를 기점으로 다양한 국제조약 및 유엔총회의 선언에서 마이너리티 권리에 대한 보호가 주창되어 왔다.⁸

5 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MinorityRights_en.pdf(2012년 12월 24일 참조).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Minority Right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Guidance for Implementation*, 2010.

6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Minority Rights*, p. 3.

7 澤敬子, 「マイノリティ女性の権利を考えるための素描: 2003年女性差別撤廃委員会による審議を手がかりに」, 『京都女子大学現代社会研究』 7, 2004, 151~162쪽.

8 그러나 여전히 주권국가 중심인 국제사회에서 마이너리티 집단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반면, 오랫동안 소수자 연구를 주도해 왔던 미국과 유럽 학계에서는 최근 마이너리티 용어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 마이너리티 연구의 미래 그룹(The Future of Minority Studies)의 알코프와 모한티(Alcoff and Mohanty)에 의하면, 이러한 퇴색은 첫째, 서구에서 ‘소수 인종’이라고 정의해 왔던 이들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혀 소수자가 아니라는 점—유럽계 백인이 지구적인 차원에서는 오히려 소수자라는 것—, 둘째로는 인구학적 변화에 의해 미국과 유럽에서도 백인들이 수십 년 내에 최소한 수적 소수자가 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인식에 의한 것이다.⁹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마이너리티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수적인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마이너리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마이너리티 연구가 공유하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조차 권력은 개인 간의 관계로 환원될 수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집단 간에 불평등의 문제로 존재해 온 것으로—예를 들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자질과 속성에 관계없이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등—, 집단에 대한 억압을 통해 그 집단에 속하는 개개인의 권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왔기 때문이다.

마이너리티가 권력의 불평등 분배라는 측면에서 정의되어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알코프와 모한티는 마이너리티의 정의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한다. 그 첫째는 개념적인 측면으로 마이너리티는 비हे게모니, 비지배적인 집단적 위치 및 그 아이덴티티를 의미하며, 이러한 비हे게모니적 위치 및 아이덴티티는 주어진 것이거나 자명한 것이 아니라 설명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두 번째는 마이너리티의 정치적인 성격에 관한 정의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마이너리티는 사회적인 권리 보장과 승인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져 마이너리티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법의 발달은 매우 더디다.

9 Linda Martin Alcoff, et al., *Identity Politics Reconsidered*, Palgrave, 2006, p. 7.

을 위한 투쟁에서 평등한 지위, 권력 및 승인을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끊임없이 쟁송(contestation)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이너리티 집단이 불평등한 지위의 타파를 위해 행하는 사회운동 자체가 곧 마이너리티 집단이 정치적으로 가시화되고 자기를 정의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마이너리티 연구 자체의 주변화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러한 아카데미아 내부에서의 주변화를 (교육)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마이너리티 개념으로 제시한다. 즉, 마이너리티 연구는 주류 학문의 연구영역 및 필독서에서 제외된 나머지 부분들을 끌어모아 성립된 학문으로, 마이너리티 연구는 아카데미아의 권력구조 내에서도 소수자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꼬집고 있다.

이러한 마이너리티 개념의 세 측면은 모두 그 사회의 다수 집단 또는 정치적 측면에서 지배 집단이 존재하고, 이 지배 집단과의 권력관계에서 마이너리티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마이너리티 연구의 미래 그룹은 마이너리티를 권력관계에서의 피지배적 위치 및 정체성으로 정의함으로써 앞서 살펴본 일반적 국제 규범의 이해보다도 그 범위를 넓혔다. 이들의 정의를 따르면 마이너리티 집단은 오히려 집단정체성과 저항과 같은 주관적 요소가 중요하며 민족 또는 종족, 종교, 언어적으로 구별되는 집단이라는 객관적 요건은 필수요건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 집단도 종족적 소수민족과 같은 마이너리티 집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수적으로는 결코 소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력관계에서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여성도 넓은 의미의 마이너리티로 정의될 수 있다. 실제로 이 연구그룹이 다루고 있는 마이너리티 집단은 인종, 종족, 장애, 여성, 성적 소수자와 같이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이들 집단들도 비지배적 집단의 아이덴티티와 크게 구별없이 정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현재 가장 일반적인 마이너리티에 대한 이해는 종족적, 인종적, 문화적으로 구분되며 지배집단에 대한 종속성이

라는 객관적 조건과 구성원의 소속감과 같은 주관적 조건을 가진 아이덴티티 집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애, 여성, 성적 소수자와 같은 그 사회에서의 비권력 집단을 개념적으로 마이너리티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구분하여 사회적 약자 집단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마이너리티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다. 이들의 최소공통분모는 그 사회의 비권력, 피지배적 위치에 있다는 점이지만, 이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권력’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권력의 내용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피지배적인 위치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

3. 일본의 마이너리티

국제사회의 마이너리티 논의를 바탕으로 이 절에서는 일본의 마이너리티의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앞 절에서 논의한 마이너리티 권리에 관한 국제 규범의 발전과 서구의 마이너리티 연구의 진전과 일본의 마이너리티 상황은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일본의 마이너리티를 둘러싼 상황과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이후 현실사회가 점차 다민족화, 다문화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가와 다수 주류사회는 마이너리티의 국내적 권리에 대한 인정과 집단적 정체성의 보호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¹⁰ 일본 정부가 최초로 마이너리티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1991년에 아이누 민족이 자유권 규약 제27조의 마이너리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부터다.¹¹

10 역사문제와 2000년대 후반의 일련의 외교문제 등으로 인해 재일코리안과 같은 전통적인 일본 사회의 마이너리티 집단은 더욱 극렬하고 직접적인 차별에 접하기도 한다.

11 그러나 이때 일본 정부는 앞서 국제 규범에서 지칭하고 있는 마이너리티의 개념을 크게 축소하여 마이너리티를 ‘소수민족’으로 번역했다.

아이누 민족의 경우 이후 선주민에 관한 국제 규범이 별도로 발전하면서 일본 정부가 2007년 선주민 권리를 보호한 조약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정식으로 국회에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¹² 하지만, 오키나와 주민 및 재일코리안과 같은 민족 집단은 아직 공식적으로 마이너리티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국제 규범의 발전에 의한 마이너리티 권리와 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승인은 일본 국내에서 여전히 요원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일본 국내의 논의도 미미한 수준이다. 마이너리티 집단의 문제는 일본의 특수성 안에서 역사문제(예를 들어, 재일코리안), 포섭적 동화정책(부락민), 또는 민족적 배려(일본계 남미 이주민)와 같이 각각의 사회집단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의 차원에서 포섭과 배제의 정책대상이 되어 왔을 뿐이다.¹³ 일본 정부의 이러한 집단별 개별정책은 마이너리티 집단들이 개별적 특수 집단으로 개념화되어 본질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게 하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집단의 본질화는 마이너리티 집단 간에 일본의 마이너리티라는 공통의 시각과 연대의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장애요소의 하나가 되어 왔다.

둘째, 일본의 주류 담론과 국가가 일본 국내의 마이너리티 집단의 권리 주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¹⁴ 일본의 마이너리티 집단은 그 특수한 문화와 가치를 보존하고 향유하는 사회집단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사상된 채, 사회적 오명(stigma)과 차별의 대상이라는 피해자 담론에 의해 논의되는 경향이 강하다. 일본의 마이너리티 연구자들은 전통적인 마이너리티 집단인 에스닉 집단뿐 아니라 일본의 독특한 사회

12 조아라에 의하면 아이누 민족을 위해 제정된 정부의 선주민 지원정책은 경제적, 정치적 권리가 빠진 문화정책에 치중된 지원정책으로 오히려 아이누 민족의 문화에 대한 협소한 이해를 불러와 정체성의 위기가 도래하였다고 한다. 조아라, 「일본의 아이누 문화정책과 소수민족 정체성」, 권숙인 편저, 『다문화사회 일본과 정체성 정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13 이러한 정책들의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적 참여 결여는 물론, 세계적인 조류인 외국인 주민의 지방정치 참정권도 불투명하다.

14 1980년에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일본 정부의 보고서는 일본에는 마이너리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카소네 수상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적 상황에서 형성된 약자 집단인 장애인, 원폭 피해자,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귀향이민으로 크게 증가한 일본계 남아메리카 이주민인 닛케이진(日系人) 등도 마이너리티 집단으로 보곤 한다.¹⁵ 때로는 사회적 약자라는 의미에서 일용직 노동자 집단, 약제(藥劑)에 의한 에이즈 감염자 등을 마이너리티 연구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로스(Roth)는 일본의 특수성을 위해 넓은 범주의 마이너리티 개념이 필요하며, 민족적 공통성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일본인이지만 그룹에도 불구하고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회집단을 내부 마이너리티(inside minorities)로 명명하여 에스닉 집단에 한정되지 않는 마이너리티 범주의 필요성을 제창했다. 대표적인 내부 마이너리티로 부락민, 장애인 그리고 원폭 피해자를 들고 있다.¹⁶ 에스닉 마이너리티의 집단적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적인 상황이 역으로 차별받는 피해자라는 개념을 무한정 확대하는 효과를 낳아 넓은 범위의 사회적 약자 집단을 모두 마이너리티로 포괄하는 상황을 야기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에서 범주를 확대하는 데에 피해자로서의 지위와 차별 경험의 유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이것은 뜻하지 않게 지배 다수 집단의 시각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즉, 마이너리티 집단의 피해자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함으로써 각 집단과 지배 집단과의 관계적 특수성이 매몰되고 단지 배제의 대상이라는 포괄성만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차별의 공통적인 경험이 집단 간의 차이를 넘어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원이 된다면

15 Toshihiko Mogi, "The Disabled in Society", *Japan Quarterly*, Vol.39 No. 4, 1992, pp. 440~448.; Karen Nakamura, *Deaf in Japan: Signing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6.; 中条一雄, 『原爆と差別』, 朝日新聞社, 1986.; Joshua H. Roth, *Brokered Homeland*,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Joshua H. Roth, "Political and Cultural Perspectives on "Insider" Minorities", in Sonia Ryang ed., *A Companion to the Anthropology of Japan*, Blackwell Publishing, 2005.; Takeyuki Tsuda, *Strangers in the Ethnic Homeland*,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16 Joshua H. Roth, "Political and Cultural Perspectives on "Insider" Minorities". 하지만 이들 영어권의 일본 마이너리티 연구자들이 성적 소수자나 여성에 무관심한 것은 성이나 섹슈얼리티가 일본 사회에서 차별의 중요한 축이라는 사실에 둔감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피해자적 유사성에 대한 강조가 가지는 실천적 함의는 있겠으나, 각각의 마이너리티 집단의 개별적인 역사와 구조적 차별의 현실, 그리고 저항의 역사를 밝히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하나의 마이너리티 집단 내에서도 사회적 지위가 다른—예를 들어 동시에 여성이거나 장애인인—다양한 정체성이 존재하고, 이들 정체성의 개별적 차별 구조의 특수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해자라는 유사성을 넘어서는 보다 분석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 담론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마이너리티의 역사는 다수 지배 집단 정체성의 경계선 밖으로 내몰린 배제의 대상만으로서가 아니라 그 경계선을 끊임없이 교란하는 저항주체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위너(Weiner)는 “(넛케이진을 예외로 하면) ‘인종화된’ 배제, 착취, 그리고 억압에 대한 저항이 근대 일본의 마이너리티 경험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다. 주로 피해자적 모습으로 표현되어 왔지만, 일본의 마이너리티는 그들에게 지워지는 구조적 불평등을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인 수준에서 저항하고 싸워왔다”고 지적했다.¹⁷

다수 사회의 억압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저항의 형태도 다양하나 1990년대 이후 일본의 마이너리티 집단들은 국내적인 공간을 넘어 국제적인 연계를 형성하여 일본 마이너리티 집단의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¹⁸ 이들의 활동에 의해 인권관련 국제기구들은 일본 정부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마이너리티 집단의 실태 파악과 권리 보장을 지속적으로 권고할 수 있었다. 이들 권고에는

17 Michael Weiner ed., *Japan's Minorities: the Illusion of Homogeneity*, Routledge, 1997, p. xvii.

18 澤敬子, 「マイノリティ女性の権利を考えるための素描: 2003年女性差別撤廃委員会による審議を手がかりに」; 親川裕子, 「女性差別撤廃委員会第6回日本政府審査傍聴記録—先住民族‘マイノリティ女性’複合差別の視点から—」, 『地域研究』 7, 2010, 133~138쪽; 反差別国際運動日本委員会, 『マイノリティ女性が世界を変える!—マイノリティ女性に対する複合差別』, 解放出版社, 2001.; Nakamura, Karen, *Deaf in Japan: Signing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Ian Neary, “Burakumin in Contemporary Japan”, 1997.; Michael Weiner, *Japan's Minorities: the Illusion of Homogeneity*; Richard Siddle, “Ainu: Japan's Indigenous People”, in Michael Weiner ed., *Japan's Minorities: the Illusion of Homogeneity*.

일본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앞서 지적한 폭넓은 마이너리티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차별철폐조약(CEDAW)’은 2009년의 제6회 일본심사에서 ‘마이너리티 여성(minority women)’과 ‘사회적 약자 여성(vulnerable groups of women)’를 구분한 최종권고를 채택했다. 사회적 약자 여성으로는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장애 여성, 여성 난민 그리고 이주 여성을 언급하고, 마이너리티 여성에 대한 권고에서는 마이너리티 여성들이 젠더와 종족에 기반한 다중 차별(multiple discrimination)을 겪는 현실에 대해 언급하고 그 실태 조사와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선주민 아이누, 부락민, 재일코리안 그리고 오키나와 여성을 포함한” 이라는 문구로 일본 사회의 마이너리티 여성의 범주를 폭넓게 열거했다. 부락민은 종족적, 언어적, 종교적으로 구분되는 집단이 아닌 신분사회의 잔재적인 성격을 가지는 보이지 않는 피지배 집단이라는 측면에서 국제 규범의 마이너리티 개념으로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우나, 일본적인 특수성을 고려해 마이너리티 집단으로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재일코리안의 경우도 일본 국내에서조차 아직껏 ‘외국인’이라는 담론틀에서 논의될 정도로 일본의 마이너리티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나 여성차별철폐조약위원회는 에스닉 집단으로 보아 마이너리티로 인식했다.¹⁹

이와 같은 결과는 전적으로 이들 마이너리티 당사자들이 각각의 개별적 특수성을 넘어 ‘일본의 마이너리티’로서 국제사회에서 권리보장운동을 전개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수준의 권리보장운동은 동시에 일본 마이너리티의 다양한 실존 및 마이너리티 집단의 자기정체성과 일본 정부의 마이너리티 인식 사이에 존재하는 크나큰 괴리도 드러냈

19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44th Session, 2009, *Concluding Observations*, www2.ohchr.org/English/bodies/cedaw/decaws44.htm (2012년 12월 24일) 참조.

다. 마이노리티 집단의 승인에 대한 요구와 다수 지배 집단의 승인 거부
는 일본 마이노리티의 정체성 정치의 핵심을 드러내며, 마이노리티가 자
명한 집단이 아니라 누구를 마이노리티로 볼 것인가라는 그 자체가 가장
침예한 쟁의(struggle)임을 확인시킨 과정이었다. 또한 이 쟁의가 정치적
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어떤 나라보다 일본에서 더욱 직접적이고 격
렬할 수 있음도 암시하고 있어 일본의 마이노리티 연구는 피해자 중심의
틀을 벗어나 보다 다각적인 정체성 정치의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 영의 ‘사회집단’ 개념과 구조적 억압

앞 절에서 지적한 마이노리티 개념의 본질화의 문제는 정치철학자 영(Iris
Marion Young)의 ‘사회집단’ 개념을 통해 피할 수 있다. 영은 1990년대부
터 서구사회이론의 주요 화제로 떠오른 차이의 정치를 정의론에 접목시
켜 논하면서 자유주의적인 정의론이 사회집단의 존재와 의미를 과소평
가하고 정의(또는 불의)의 문제를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분배문제로 축소
하였다고 비판했다. 자유주의 분배 패러다임은 물질적 재화의 공정한 분
배를 규정하는 일반원리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어, 현실사회
의 권력구조는 이미 주어진 것으로 묻지 않는 경향이 있다.²⁰ 영은 이러
한 주류 정의론의 탈현실적인 인식론을 비판하고, 현실사회의 불의를 억
압과 지배의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논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자유주의의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집단’을 정의론의 중심에 둘
것을 제안한다.

20 롤즈의 분배의 두 원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John Rawls,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1991.

영의 사회집단은 앞서 논의한 마이너리티 집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²¹ 이 개념이 신사회운동의 주체였던 현실적인 마이너리티 사회 집단에서 도출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마이너리티의 개념에 매우 가깝다. 사회집단을 다수 지배 사회와의 다양한 권력관계—억압과 지배—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된 점이다. 또한 사회집단은 자유주의 정치사상에서 중요시되어 온 개인들의 결사체인 이익집단과 대비되는 집단 개념으로, 정체성과 친밀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체성 집단이다. 영은 사회집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사회집단은 문화적 형태, 실천행위 또는 삶의 방식에 의해 적어도 다른 한 집단과 구분되는 사람들의 집합이다. 사회집단의 구성원은 비슷한 삶의 방식과 경험에 의해서 서로 간에 특별한 친밀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집단 정체성이 다르거나 삶의 방식이 다른 이들보다 더 큰 결속력을 갖는다. 집단은 사회관계의 표현이다; 최소한 다른 한 사회집단과의 관계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이다. 집단 정체성은 비록 같은 사회에 소속되어 있어도 삶의 방식과 결사의 형태에서 차이를 경험하는 사회 집합체들 간의 대면과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²²

영의 사회집단은 앞 절에서 살펴본 마이너리티 개념과 유사하지만, 사회집단을 정의하는 데 본질주의적인 개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즉, 사회집단의 특징은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essential attributes)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다는 데에 있다. 피부색 또는 생물학적 성별 또는 언어가 특정 인종이나 에스닉, 여성의 사회집단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집단

21 영에 의하면 사회집단이 모두 마이너리티 집단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로마 가톨릭 집단은 사회 집단으로 볼 수 있지만 사회적 억압과 지배 하에 있는 집단은 아니라고 한다.

22 Iris Marion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 43. 필자 번역 및 강조.

은 그 집단의 사회적 지위나 위치, 그리고 그 사회적 지위나 위치에 의해 집단 구성원들이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공유하는 동일시 과정(identification)에 의해서 형성되는 정체성이 기반이 되는 집단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집단의 정체성은 외부적으로 강요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형성되기도 하며 흔히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²³

둘째, 사회집단은 그 형성과 변화에 있어 관계성과 동태적 과정(social processes)을 중요시한다. 하나의 사회집단은 다른 집단과의 대면과 상호작용에 의해 상대적인 집단의 차이가 관계적으로 구성되며, 그 차이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로—차별이나 억압의 형태도 포함해—동태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겪는다. 이러한 관계성과 과정을 중시하는 집단 개념을 취한다면, 마이너리티 집단의 존재를 정태적 혹은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사회 내에서 다수 지배 집단을 포함한 다른 사회집단과의 정치적 관계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성 과정은 지금까지뿐 아니라 현재 및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열린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시각은 마이너리티 연구의 초점을 지배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하고, 그 관계성의 변화에 대한 동태적 과정에 둘 것을 요구한다.

영의 사회집단 개념의 또 다른 특징은 사회집단과 개인 구성원의 관계로, 사회집단이 개인 구성원보다 존재론적으로 선행함을 강조하는 데 있다. 이 부분은 특히 정의와 억압의 문제를 동질한 속성의 개개인 차원의 분배문제로 환원할 수 없다는 영의 정의론의 근간이며, 사회변혁운동의 주체를 사회집단으로 설정하는 실천 논리이기도 하다. 영은 집단 정체성 개념의 유용성을 포기하지 않고 개인 정체성의 형성에 있어 사회집단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즉, 개인의 정체성은 개인의 동의와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결사체에서 가정하듯 사회집단을 구성하는 출발점이

23 Iris Marion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 44.

아니고 오히려 사회집단과 사회적 카테고리에 의해 차후적으로 형성된 결과라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이란 사회적 관계를 벗어난 선형적인 존재로 가정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세계의 개인은 개별적 정체성뿐 아니라 사고방식, 자기평가 그리고 감정표현의 방식까지도 상당부분 그 개인이 동일시하는 집단과의 연관성에 의해 결정되곤 한다. 이렇게 존재의 주체성 그 자체가 사회집단과의 관계에서 형성되기 때문

에 어떠한 개인도 사회집단을 초월하거나 사회집단적 정체성을 완벽하게 부인하는 독립적인 주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²⁴ 즉, 개인은 삶의 어느 순간 자신이 특정 사회집단(들)의 구성원이 되어 있음을 원하든 원치 않든 ‘발견’하게 되는 사회적 존재인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정체성을 사회집단과 분리시키는 사고는 비현실적인 이론적 추상에 지나지 않게 되고, 사회집단은 어떠한 사회적 정의를 논하는 이론에 있어서도 그 이론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은 사회집단을 개인 구성원에 대한 억압의 원인으로 보는 자유주의적인 시각은 개인의 특정한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 오히려 억압적이라고 한다. 모든 마이너리티 집단의 구성원을 사회집단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실천적 전략도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자기부정 전략으로 결코 해방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림 2〉 2008년 필리핀 이주여성의 혼외자 국적소송의 승소기사

²⁴ Iris Marion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 45.

이 글의 목적에서 비추어보면 마이너리티 집단을 영이 제시하는 사회집단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마이너리티 집단의 카테고리적인 본질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도 마이너리티 집단의 이론적, 실천적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또한 사회집단을 구조적으로 억압, 지배하는 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정의론의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게 되어 정체성 정치의 실천적 함의도 제공해 준다.

그렇다면 영이 말하는 사회집단의 억압과 지배란 무엇을 말하는가? 영은 먼저 억압을 구조적 개념으로 정의한 다음 구체적인 억압의 형태를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영이 의미하는 구조적 억압은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지배와 탄압보다도 좋은 의도를 가진, 자유주의적 사회 내에서 언어나 상징, 배제와 스테레오타입, 당연시되는 규범과 대중적 지지 등에 의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재생산되는 일상의 구조를 의미한다. 그는 푸코의 권력 개념을 차용하여 구조적 억압이 반드시 한 지배적 사회집단이 다른 사회집단과의 일대일 관계에서 행해지는 억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구조적 억압은 직접적 지배자 이외의 일견 순진한 일반시민과 같은 제삼자나 대중도 무관심이나 침묵으로 인해 지배의 구조에 동참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그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모든 제도에 뿌리깊이 내재되어 재생산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억압은 구체적으로는 착취, 주변화, 무력화, 문화적 제국주의 그리고 폭력의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한다. 이 억압의 개념은 종래의 권력 개념보다 훨씬 포괄적이면서도 푸코의 권력 개념처럼 추상적이지 않아서 영 본인이 언급하듯 현실의 사회집단이 억압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영은 마이너리티 집단별로 단일한 억압구조를 강조하는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민족차별, 이성애주의와 같은 개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억압은 집단별로 차별되는 단일한 억압구조가 아니라 때로는 중첩되며, 경험하는 차별이 유사하기도 하기 때문에 집단별 억압구조를 본질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영이 경계하고 있는 집단별 차별의 카테고리는 집단 정체성의 형성에 현실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인종주의는 특정한 집단이 착취, 주변화, 문화적 제국주의와 같은 억압을 받는 경우, 특정 인종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의 다섯 가지 형태의 억압은 집단이 집단으로서 겪는 차별의 실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나 그러한 차별과 억압은 마이너리티의 카테고리, 즉 인종, 젠더, 민족, 계급, 섹슈얼리티 등의 비대칭적 구조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영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집단별 단일 억압구조를 가정하지 않으면서도 인종, 젠더, 민족, 계급, 섹슈얼리티가 사회집단의 차별의 중요한 내용을 형성하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5. 우에노(上野)의 복합차별론

일본에서 마이너리티를 사고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차별의 경험임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이러한 마이너리티의 차별을 개념화한 이론으로 대표적인 논의로는 우에노의 ‘복합차별론’을 들 수 있다.²⁵ 복합차별론은 사와와 구마모토가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다음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교차성 개념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²⁶ 복합차별론은 엄밀하게 말하면 마이너리티 연구방법이라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차별이론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지만, 이 논의가 다수 우위 집단과 복수의 사회적 약자 집단을 전제로 하고 있고 저자가 사회적 약자 집단을 마이너리티 집

25 물론 필자의 지식 부족으로 우에노 이외의 이론적 논의를 모두 파악하지 못했을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한다. 더불어 재일코리안을 비롯한 개별 마이너리티 집단들의 역사와 현실에 주목한 개별 연구는 이 글에 모두 소개할 수 없는 정도의 연구 축적이 있음을 밝혀둔다.

26 澤敬子, 「マイノリティ女性の権利を考えるための素描」; 熊本理沙, 「マイノリティ女性に対する複合差別」をめぐる論点整理, 『人権問題研究資料』第17号, 2003.

단의 번역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앞서 논의하였던 마이노리티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 마이노리티이론으로 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복합차별 개념은 우에노 본인도 인정하고 있듯 충분히 이론화된 개념이라기보다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차별의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서술적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즉, “복수의 차별이, 그것(차별)을 성립시키는 복수의 문맥 속에서 꼬이거나 갈등하며, 하나의 차별이 다른 차별을 강화하거나 또는 보상하는 복잡한 관계”에 있는 차별의 복합성을 개념화하고자 제시한 것이다.²⁷

우에노는 차별의 복수성에 주목하면서 복수성의 정도에 따라 1) 단상(單相)차별, 2) 중층(重層)차별, 3) 복합(複合)차별로 개념적 분류를 시도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일한 차원만의 차별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복수의 차별이 겹쳐서 발생하므로 —예를 들어 신체적 장애에 대한 차별은 곧 이들이 경제적으로 저임금 직업군에 집중하게 되어 겪는 경제적 차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단상차별보다 중층차별 또는 복합차별을 분석할 필요를 강조한다. 우에노는 여기에서 중층차별은 “다원차별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는) 복수의 차원의 차별이 중층화하여 축적해 있는 상태”라고 설명한 후, 이 개념을 자명한 것으로 간주, 복합차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대비개념으로만 사용하고 있다.²⁸ 우에노에 의하면 복합차별 개념의 특징은 차별의 복수성에 더하여 복수의 차별 간의 관계성에 주목하는 점에 있다. 사실 이 복수의 차별 간의 관계성은 복합차별론의 가장 독창적이고 중요한 내용으로, 뒤에서 논하게 될 교차성 개념과 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우에노는 차별 간의 관계를 앞서 인용한 것처럼 꼬이거나, 갈등하거나, 강화하거나 또는 보상하는 관계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구

27 上野千鶴子, 「複合差別論」, 井上俊ほか編, 『差別と共生の社会学』, 岩波書店, 1996.

28 上野千鶴子, 「複合差別論」, 219쪽.

체적으로 계급, 성별, 민족, 장애의 주요 사회적 변수와 연관시켜 각 두 변수의 상호관계를 서술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노동운동이 분과주의를 내세워 내부의 가부장제를 강화하거나(계급과 젠더의 관계), 여성의 재생산권 주장이 장애 여성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위협하거나(젠더와 장애의 관계), 또는 장애단체 내에서도 민족차별이 존재하는 점(장애와 민족의 관계) 등 네 가지 차별의 열 두 가지 가능한 조합의 예를 각각 제시한다. 교차성 개념이 주로 인종과 젠더를 중심으로 이론화되었던 것에 비해 복합차별론은 그보다 훨씬 다양한 차별의 종류 간의 관계를 파악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예를 들면 이 복합차별론은 1995년에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미군에 의한 소녀 폭행사건 당시, “기지 문제를 여성 문제로 왜소화하지 말라”는 오키나와 주민 내부에서 드러난 차별적 젠더의식이나, 재일코리안 여성들에 의해 제기된 민족집단 내부의 가부장제, 그리고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 등의 문제를 드러내는 개념적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에노의 복합차별론은 마이너리티 연구에 제한적인 공헌만을 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마이너리티를 둘러싼 관계의 복합성(교차성)의 구조적 특성을 전적으로 ‘차별’의 틀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합성을 차별에 국한할 경우 오히려 복합성 개념이 가지는 가능성을 축소하게 되며, 마이너리티의 피지배적인 정치사회적 위치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피해자로 만들 위험성이 크다. 마이너리티 정체성을 곧 차별로 등치하면서 차이가 곧 차별로 본질화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또한 마이너리티의 집단적 관계성을 전적으로 차별에 둬으로써 정체성 정치로 대변되는 집단 내부의 긍정적 의미 재생산과 같은 마이너리티 집단의 중요한 저항의 동력을 충분히 설명하기가 어렵게 된다.

둘째, 각각의 차별을 본질적이고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차별 간의 관계를 충분히 이론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에노의 복합차별론은 차별의 “한 가지 카테고리가 성립함으로써 그 카테고리

내부의 차별이 억압되어 은폐되는 효과” 즉, 계급차별이 젠더차별을 강화하거나 또는 그 반대일 수 있다는 점에는 주목하여,²⁹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차별들의 상호 복합적인 관계를 이론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각각의 차별은 본질적으로 이미 존재하며 한 가지 차별이 다른 차별에 의해서 정의되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있다. 마이너리티 정체성은 인종화되면서 동시에 젠더화된 정체성이며, 주류사회의 담론도 그러한 전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즉, 계급이 어떻게 젠더화되고 젠더가 어떻게 계급화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족이 어떻게 여성화되거나 또는 남성화되고 이것이 민족차별과 젠더차별의 단순합계가 아닌, 분리될 수 없는 새로운 제삼의 형태의 차별로 기능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이 사실상 우에노가 본인이 제시한 중층차별의 관점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결국 중층차별과 복합차별을 개념적으로 충분히 구별하여 논의하지 않은 이유라고도 볼 수 있다.

6. 교차성(Intersectionality)이론과 마이너리티

이 절에서는 영과 우에노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교차성 개념에 주목한다. 교차성 개념은 1980년대의 흑인 페미니즘에서 유래한다. 이후 교차성 개념은 페미니즘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공헌이라고 지칭되며³⁰, 크게 피지배 집단 또는 마이너리티 집단의 아이덴티티 이론과 구조적 차별에 관한 이론으로 논의되어 왔다. 교차성 개념의 이론적 기원은 흑인 여성들이 경험하는 특수한 또는 복합적

29 上野千鶴子, 「複合差別論」, 221쪽.

30 Leslie McCall, “The Complexity of Intersectionality”,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Vol. 30 No. 3, Spring, 2005, pp. 1771~1800.

차별에 있었다. 흑인 여성들은 인종적으로 흑인 마이너리티 집단의 구성원이지만 동시에 젠더로 보면 여성이라는 비지배 집단에 속한다. 이들의 경험은 흑인 사회 내에서는 여성문제로 치부되어 경시되고 여성 집단에서는 인종문제로 치부되어 주변화된다.

이러한 의미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크렌쇼(Crenshaw)는 성폭력의 피해자인 흑인 여성이 미국의 차별이론 내에서 자신의 받은 피해의 성격이 인종차별인지 젠더차별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에 놓이게 됨을 지적하고, 흑인 여성이 겪게 되는 복합적 주변화의 경험은 인종차별이나 여성차별의 어느 한 가지 억압구조로 환원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³¹ 예를 들어 흑인 여성들은 성적으로 자유분방하다는 스테레오타입으로 인해 백인 여성보다 그 피해자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에 저항하기 위해 같은 흑인 남성이 가해자일 경우에 피해신고를 꺼린다. 피해를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보다는 마이너리티 집단 내부에서 오히려 소외될 위험성마저 존재한다.³² 이는 흑인 여성들이 주류사회의 스테레오타입과 흑인 사회 내의 권력구조에 의해 백인 여성이나 흑인 남성들이 겪게 되는 폭력과 차별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적 차별에 처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험은 단지 산술적으로 여성차별에 인종차별을 더한 것과 같은 성격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흑인 남성이나 백인 여성들의 경험이 이들의 경험을 대표할 수 없다. 이렇게 흑인 여성들이 흑인이면서 동시에 여성인 까닭에 인종주의와 여성차별의 교차점에 존재함으로써 겪게 되는 특수한 경험은 남성 중심인 반인종차별운동(또는 마이너리티 집단)이나 백인 여성 중심인 페미니즘의 어느 한 시점만으로는 그 차별의 복합적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지

31 Kimberlé W. Crenshaw,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1989, pp. 139~167.

32 Kimberlé W. Crenshaw, "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Violence Against Women of Color", *Stanford Law Journal*, Vol. 43 No. 6, 1991, pp. 1241~1279.

못한다. 흑인 여성들의 경험은 인종차별 또는 젠더차별의 어느 한 측면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서는 그들이 겪는 경험의 전체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흑인 여성들의 특수한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존 억압의 축들이 교차하면서 만들어내는 복합적 아이덴티티 및 차별의 구조를 밝힐 수 있는 개념으로 교차성 개념이 주목받게 되었다.

흑인 페미니즘에서 출발한 교차성 개념은 이와 같이 인종과 젠더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후 계급, 종족, 국적, 연령, 장애 그리고 성적 지향성이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카테고리로 더해졌다. 오늘날의 교차성 개념은 이들 다양한 축이 교차하면서 만들어내는 아이덴티티, 실존적 경험 또는 차별의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교차성 개념은 흑인 여성이라는 본래의 범주를 넘어 이론적, 방법론적으로 마이너리티 연구에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아 왔다. 개별 연구에서 교차성 개념은 논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사용하고 각각의 마이너리티 집단의 특수성에 따라 중요한 카테고리를 결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다양한 정의들의 출발점은 사회관계(social relations, 즉 젠더, 인종, 국적, 연령, 성적 정체성과 같은) 및 정체성의 다양한 측면들의 복합적 관계성에 주목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³³

마이너리티 연구에 있어 교차성 개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보여진다. 즉, 마이너리티 집단의 비본질적인 정체성의 문제, 구조적 억압의 문제, 그리고 정체성 정치에 대한 공헌이 그것이다.

1) 마이너리티의 정체성

교차성 개념은 주체의 실존적 경험과 그 주체의 복합적 아이덴티티의 형

33 Kimberlé W. Crenshaw,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Kimberlé W. Crenshaw, "Mapping the Margin.," Lesile McCall, "The Complexity of Intersectionality.," Kathy Davis, "Intersectionality as Buzzword: A Sociology of Science Perspective on What Makes a Feminist Theory Successful", *Feminist Theory*, Vol. 9 No. 1, 2008, pp. 67~85.; Jennifer C. Nash, "Re-thinking Intersectionality", *Feminist Review*, 89, 2008, pp. 1~15.

성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아이덴티티 이론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 주체는 복수의 정체성을 가지며, 이들 복수의 정체성 간의 복합적 관계에 의해서 주체의 정체성이 형성, 변화해 간다. 마이너리티 정체성은 흔히 이미 주어진 것으로 치부되어 단일화된 개념으로 논의되기 쉽지만, 영의 사회집단 개념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이때, 교차성 개념은 마이너리티 정체성의 본질화를 막고 정체성 카테고리 내부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한 민족집단이라는 마이너리티 정체성 집단을 상정하더라도 그 내부에 다른 정체성—계급, 젠더, 국적, 장애 등—이 교차하면서 이들 복수의 정체성이 어떻게 민족집단 내부의 차이와 다양성을 만들어내는지에 민감하게 된다. 이러한 시각은 정체성의 형성이 한 가지 정체성에 또 한 가지 정체성이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즉 두 배의 또는 세 배의 복합적인 정체성이라기보다는 복수의 정체성이 교차한 새로운 정체성으로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민족정체성이 어떻게 젠더화되며, 동시에 계급화되는지에 주목해 보자. 일본에서 주류 젠더 규범인 전업주부는 일본인의 중산층 여성의 정체성이다. 전업주부는 평생직장이 있는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되 가사 및 육아를 직접 전담하는 여성의 젠더정체성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산층이라는 계급정체성이 전업주부의 젠더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업주부 정체성은 근대 일본 사회의 새로운 젠더정체성으로 소수민족이나 아이누 여성이나 재일코리안 여성은 일본 중산층 여성의 민족화, 계급화된 젠더정체성을 공유하지 않는다. 마이너리티 여성들의 경제적인 지위가 평생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면, 여성이라는 공통의 젠더정체성만으로 일본 여성들의 중산층 젠더정체성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젠더정체성 그 자체가 계급정체성과 민족정체성에 의해 정의되며 이들은 상호 간 규정하는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재일코리안 여성들의 정체성을 단순히 보편적인 젠더정체성과 민

죽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오류이며 ‘재일코리안 여성’이라는 제삼의 민족화된 젠더정체성을 밝혀야 한다. 또한 이들 정체성 내부에서도 또 다른 중요한 정체성 카테고리가 교차할 때 그러한 차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예로 이란으로부터 일본으로 온 이주노동자의 정체성은 육체노동자라는 집단정체성으로 규정되나, 이 또한 마이너리티 남성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보이는 육체노동이 가지는 블루칼라의 계급적 성격이 곧 이주노동자의 남성성이라는 젠더정체성을 상호규정한다. 이 역시 화이트칼라의 중산층 일본 남성들과는 전혀 다른 젠더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차성 개념은 어떠한 정체성 카테고리도 본질화하지 않고 내부의 차이 및 정체성 형성의 과정에 주목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포스트구조주의의 입장에서 흔히 보이듯 정체성 카테고리 자체를 전면 부정하거나 반대로 무한정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하여 결과적으로 정체성의 의미 자체를 잃게 하는 오류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마이너리티 정체성의 연구에 유용한 이론적 시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2) 구조적 억압

교차성 개념은 마이너리티의 피지배적 성격을 규정하는 구조적인 억압과 차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데에도 유용하다. 마이너리티 집단 내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차별과 억압이 더 중요한지에 관한 논쟁과 갈등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교차하는 각 지점에 그 고유의 억압의 경험이 있고 또한 그것이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마이너리티 여성 또는 남성이 겪는 차별은 그들의 다른 정체성, 즉 인종이나 계급, 성적 지향성을 가진다는 이유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재일코리안 여성들의 빈곤은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적인 여성들의 직종에 취업하지 못했으나, 여성이라서 마이너리티 남성들이 주로 종사한 육체노동 직에서도 배제되는 현실에 의해서 더욱 심화되었다는 지적에서도 드러난다.³⁴ 크렌쇼도 구조적 교차성(structural intersectionality)이라는 개념을 들어, 마이너리티 여성(이 경우 흑인 여성이나 이주 여성)의 성폭력의 문제는 일견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차별이나 가부장제의 영향을 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빈곤층이거나 인종적 차별에 의해 실업의 상태에 있어 폭력에 대한 취약성을 더욱 증진시키는 구조 내에 위치한다고 분석한다.³⁵

일본의 마이너리티의 구조적 차별과 억압의 양상도 비슷하다. 부락민이나 재일코리안과 같은 마이너리티 집단은 신분적 스티그마나 민족적 멤버십이 곧 그들의 경제적인 위치를 상당히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원폭 피해자들은 피해 경험이 민족이나 젠더에 의해 다른 차별의 양상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원폭 피해지역 출신의 여성들은 장애아 출산의 두려움으로 인해 결혼상대에서 배제되었으며, 일본국민이 아닌 원폭 피해자들은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절한 보상에서 배제되었다. 이렇게 마이너리티의 피지배적 위치는 단일하고 독립적인 억압의 카테고리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인종주의나 가부장제, 민족차별 등은 서로 교차하여 그 성격을 상호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차성을 밝히는 것이 마이너리티의 피지배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3) 정치적 실천전략

마지막으로 교차성 개념은 마이너리티의 정체성 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유용하다. 정체성 이론의 비판론자들은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34 鄭暎惠, 「アイデンティティを超えて」, 井上俊ほか 編, 『差別と共生の社会学』, 岩波書店, 1996; 徐阿貴, 『在日朝鮮人女性による「下位の対抗的な公共圏」の形成』, お茶の水書房, 2012.

35 Kimberlé W. Crenshaw, "Mapping the Margin."

정치가 집단의 차이를 본질화하여 결국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억압적이며 외부적으로 연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크렌쇼는 정체성 정치의 문제점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집단 내부의 차이를 무시하거나 통합해 버리는 데 있다고 비판한다.³⁶ 이러한 의미에서 교차성 개념은 정체성 정치와 같은 마이너리티의 현실 변화 전략에서 자기반성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자기가 속한 정체성 집단 내부의 소수자적 입장과 차이, 그리고 차별구조를 이해하는 도구로서 젠더, 인종, 종족, 성적 지향 등에 기반한 차별 중 어느 차별에 정치적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쟁을 지양하고, 차이에 기반을 둔 마이너리티 집단 간의 연대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부락민들이 일본 국적을 소유한 점을 특권으로 보는 대신 일본인이면서 부락민, 그리고 동시에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위치가 가지는 특수성 및 억압의 경험을 다른 마이너리티 집단과의 차이로서 이해하고, 억압의 제거라는 목적을 공유함으로써 연대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차별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주체의 행위자성을 부각하고 마이너리티의 피해자 정체성을 넘어서 저항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연대할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7. 결론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마이너리티의 비본질적 개념과 연구를 위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해 보았다. 일본의 마이너리티 집단을 염두에 두기는 했지만, 반드시 일본의 마이너리티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³⁶ Kimberlé W. Crenshaw, "Mapping the Margin."

오히려 일본의 마이너리티를 보다 발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을 고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필자가 정치학과 페미니즘의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들을 주로 참고로 하였다는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영의 사회집단과 구조적 억압문제, 그리고 우에노의 복합차별론은 모두 오늘날 마이너리티 연구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 이론들과 관심을 공유하면서도 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교차성 개념은 마이너리티 연구에 매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마이너리티 연구에 교차성 개념이 시사하는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다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이너리티 집단정체성을 본질화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체성 카테고리들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면서 마이너리티 정체성 내부의 차이를 개념화할 수 있다. 둘째, 마이너리티 집단의 피지배자성, 즉 다수 사회의 억압과 차별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 세째,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해 사회변혁의 공동의 목적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 정치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가 있다.

다만 이 글에서 논의한 교차성 개념은 마이너리티 연구의 출발점일 뿐이다. 교차성 개념을 더욱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교차성 개념의 개념적 불확실성에 의한 열림 그 자체가 또한 연구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희망해 본다.³⁷

37 Kathy Davis, "Intersectionality as Buzzword," 교차성 개념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이 글에서 별도로 논의할 지면이 없었으나 앞서 언급한 맥콜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참고로 밝혀둔다.

특집 | 일본 사회의 마이너리티

마이너리티 이론의 탐색: 비본질적·포괄적 연구를 위하여 | 신기영

투고일자: 2012. 11. 22 | 심사완료일자: 2012. 12. 12 | 게재확정일자: 2013. 2. 6

이 글은 마이너리티의 비본질적 개념과 연구를 위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도입부에서는 마이너리티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 국제규범과 일본적 특수성을 간략히 살펴보고, 본문에서는 정치학과 페미니즘 이론 분야의 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마이너리티 연구를 위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영의 사회집단과 구조적 억압문제, 우에노의 복합차별론의 장단점을 논의하고, 이 이론들과 관심을 공유하면서도 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각으로 교차성(intersectionality) 개념을 상세하게 살펴본다.

마이너리티 연구에 교차성 개념이 시사하는 중요한 함의는 첫째, 마이너리티 집단정체성을 본질화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체성 카테고리들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면서 집단 내부의 차이를 밝힐 수 있다는 점, 둘째, 마이너리티 집단의 피지배자성, 즉 다수사회의 억압과 차별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점, 셋째,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해 사회변혁의 공동 목적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 정치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마이너리티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을 제시한다.

주제어: 마이너리티, 정체성, 교차성, 사회집단, 복합차별론

조선족의 일본 이주에 관한 시론: 외국인 수용을 둘러싼 국가와 기업 | 권향숙

투고일자: 2012. 11. 17 | 심사완료일자: 2012. 11. 28 | 게재확정일자: 2013. 2. 6

이 글은 조선족의 일본행을 일본의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 수입정책과 결부시켜 살펴봄으로써 그 과정에 담긴 다양한 함의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첫째, 일본에 있는 조선족의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였으며, 조선족을 ‘보이지 않는 소수자’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1980년대 전반부터 진행된 일본으로의 이주를 일본의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 수입정책과 관련시켜 고찰하며 셋째, 그 배경에 담긴 함의를 쫓는다. 결론적으로 조선족의 도일과정은 일본의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 수입과 관련된 법제도와 정책, 다시 말해 ‘유학생 10만 명 계획’의 실시, ‘개정 입국관리법’의 시행, 신원보증인제도의 폐지 등 일련의 정책과 그에 따른 취학생 및 비합법적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과 전문직, 기술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 수입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지금까지의 이민 연구 이론들이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던 국가와 기업의 역할이 있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주제어: 일본의 조선족, 보이지 않는 소수자,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이동

Minorities in Japan

Toward Non-Essential and Inclusive Research on Minority | SHIN Ki Young

This article aims at presenting non-essential concepts and an inclusive methodology for minority research.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is devoted to an overview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minority' as there have been in Japan and worldwide. The second part examines the recent feminist theories on structural oppression and discrimination of minority social groups, as offered by Iris Young, Chizuko Ueno, and by Black feminist theorists. In doing so, this article discusses how Young's concepts of 'social group' and 'structural oppression', and Ueno's concept of 'complex discrimination' can help us perceive minority groups as non-essential social groups, historically constructed vis-à-vis the dominant 'majority' of their society. This study finds particularly useful the Intersectionality approach originally employed by Black feminists. This is because the Intersectionality approach can serve as a tool for analyzing the complex identity formation of the minority, as well as their structural subordination to the majority by highlighting the mutually constitutive relations among different social identities fostered by their structural positions and socially meaningful categories such as nation, ethnicity, gender, or class.

• **Keywords:** Minority, Identity, Intersectionality, Social Group, Complex Discrimination

A Study on Joseon-jok's Immigration to Japan: Japan as a Nation-State and Enterprises for Accepting Foreign Nationals | KWON Hyang Suk

This paper locates the problem of the Joseon-jok (the so-called Korean-Chinese)'s immigration to Japan in the context of Japan's acceptance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foreign workers, and considers the implications thereof. Firstly, it roughly describes the current state of the Joseon-jok living in Japan, defining them as the 'Invisible Minorities.' Secondly, it considers the Joseon-jok's immigration to Japan, which started in the early 1980s in association with Japan's acceptance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foreign workers. Lastly, it looks into the policies that worked in the background.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Joseon-jok's immigration to Japan is deeply tied to the Japanese legal system and its policies involving Japan's acceptance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foreign workers. This means that the Joseon-jok's immigration to Japan must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new set of policies of